###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권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751

발의연월일: 2024. 11. 21.

발 의 자 : 권영진 · 주진우 · 엄태영

윤한홍 · 조경태 · 정성국

박정하 • 이만희 • 강명구

김상훈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인허가의제, 과징금의납부기한 연기와 분할납부,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1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중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을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립인가의 취소 및 업무정지처 분의 제척기간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른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1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3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하려면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 1.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 2.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 세 강제징수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 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 담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다음각 호의 허가·협의·신고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를 받거나 협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협의·신고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30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 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정명령"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로 본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면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 제3조(「건설기술 진흥법」의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정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제척기간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 제4조(「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업정지,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 말소의 제척기간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5조(「건축법」의 개정)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를 "허가·인가·지정·협의·신고 또는 신청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권자가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이 있은 것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를 "제5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11조제8항 전단 중 "처리기준"을 "처리기준(처리기준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통보받은 처리기준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6항의"를 "제6항 및 「행정기본법」 제24조제3항의"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을 "제11조제5항부터 제7 항까지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을 "제1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1조제5항·제6항"을 "제1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8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③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 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 제6조(「골재채취법」의 개정)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 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승인의 의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7조(「공공주택 특별법」의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5제2항 후단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7조에 따른 지구계 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으로, "한다)"를 "한다)에 관하여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 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8조(「공인중개사법」의 개정)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9조의3(개설등록 취소 등의 제척기간) ① 제3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 지처분은 그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의 경우: 5년
  - 2. 업무정지처분의 경우: 3년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제척기간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3조제2 항 및 제3항에 따른다.
- 제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을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 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하고,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제61조의2제1항 중 "제61조제3항"을 "제61조에 따른 인·허가등의의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 제2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1조제3항"을 "「행정기본법」 제24조제3항"으로 한다. 제9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하고,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제10조(「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개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등이 수반되어 건축허가서·건축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때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허가 관련 서류에 첨부된 도면으로 그 서류를 갈음한다.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11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가"를 "한다)에 관하여 시장 · 군수등이 인 ·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 · 허가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부분 중 "인 · 허가등이"를 "인 · 허가등에 관하여 시장 · 군수등이 인 ·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 · 허가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3항 단서"를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때에 시공자가 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계 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나 제6항에 따라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정하는 기한까지 인·허가등의 의제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2조(「도시개발법」의 개정)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13조(「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14조(「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의 개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

지를 준용한다.

제15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한다)에 관하여 지정권자가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승인하고자 하는"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를 "하다"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16조(「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서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11조의 제목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서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를 "제1항에따른 이의신청 및 그 처리절차"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17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이의신청)"을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불허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은"을 "구청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로 한다.

제1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 항을 삭제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⑥ 이행강제금의 부과, 납부,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 제18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허가등이"를 "인·허가등에 관하여 시장·군수등이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각 호 외의 부분 중 "인·허가등이"를 "인·허가등에 관하여 시장·군수등이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허가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허가등이"를 "인·허가등에 관하여 시장·군수등이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인·허가등이 관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제5항 전단 중 "제4항 단서"를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시공자가 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계 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나 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정하는 기

한까지 이 조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6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② 시장·군수등은 최초의 조치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 제19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4조의 제목 "(이의신청 등)"을 "(시설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39조의21의 제목 "(이의신청 등)"을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 제20조(「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한다)에 관하여 새만금 청장이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 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제1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21조(「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22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 제23조(「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 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한다)에 관하여 건설청 장이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 서는 해당 인·허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 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

- 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건설청장은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24조(「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개정)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5조(「주택법」의 개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

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 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6조(「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승인"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승인"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 까지를 준용한다.

제27조(「택지개발촉진법」의 개정)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다른 법률에 따른 인· 허가등의 의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 를 "한다)에 관하여 지정권자가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으로 하며, 같은 조제2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28조(「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55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5조의7에 따른 양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그 양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공인중개사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인가취소 등) ① ~ ③	제32조(인가취소 등)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	4
소 및 업무정지처분은 <u>위반 사</u>	위반행
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	위가 종료된 날
면 할 수 없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⑥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립인가의 취소 및 업무정지처
	분의 제척기간에 관하여는 「행
	정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제3
	<u>항에 따른다.</u>
제42조(이의신청) ① 제41조에 따	제42조(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른 과징금의 부과에 이의가 있	이의신청 특례) ① 국토교통부
는 자는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장관은 제41조에 따른 과징금
30일 이내에 사유서를 갖추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	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
<u>청할 수 있다.</u>	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

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

- 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 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43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과

  - 제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
     일 입은 경우
  - 2.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큰 어려움이예상되는 경우
  -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

- <u>더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u>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 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 제43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국토교통부장 관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 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 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29 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 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 공하게 할 수 있다.
  -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 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 기 또는 분할 납부를 하려면 납 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 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 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납

- 부기한 1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 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 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할 때에는 납부기한 연 장이나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 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 니하였을 때
- 2. 담보의 변경이나 담보 보전 에 필요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 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나 지 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나 나머지를 징 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 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 장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면 납 부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 결정 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 1.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 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 은 경우
  - 2.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 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 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 강제징수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 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 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 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 담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 납부, 담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 • 구조문대비표

혂 행

제14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14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 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 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허가·협의·신고를 받 은 것으로 본다.

- 1. ~ 4. (생 략)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2 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 라 허가를 하는 경우와 제12조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 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 <삭 제>

개 정 아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 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12조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협의ㆍ신고 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를 받거나 협의 ·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1. ~ 4.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ㆍ협의ㆍ신고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 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 지에 따른다.

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 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 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30조의2(이행강제금) ① (생략)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 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 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 고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 ·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

<삭 제>

제30조의2(이행강제금) ① (현행 과 같음)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 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 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에 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 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 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 다.
  -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하여 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정명령"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로 본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

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 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 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 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 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 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 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⑦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하여 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정명령"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로 본다.
- 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가 제7항에 따라 이행강제 금을 부과, 징수하면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

지사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 금을 부과·징수하면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 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이행장제금의 부과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u><삭 제></u>

<삭 제>

<u>야 한다.</u>

⑨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삭 제> 부과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0조의2(제척기간) ①・② (생	제80조의2(제척기간) ①・② (현
략)	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정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제척기간에 관
	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4조의2(제척기간) (생 략)	제84조의2(제척기간) <u>①</u>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u>&lt;신 설&gt;</u>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업정지,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
	록 말소의 제척기간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건축허가) ① ~ ④ (생	제11조(건축허가) ① ~ ④ (현행
략)	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	⑤
으면 다음 각 호의 <u>허가 등을</u>	<u>허가·인가</u>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지정·협의·신고 또는 신청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다)에 관하여 허가권자가 인ㆍ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1. ~ 23. (생 략)	1. ~ 23. (현행과 같음)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⑥ <u>제5항에 따른</u>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	
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	
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	
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	

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고, 협 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 설>

#### ⑦ (생략)

- ⑧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12조제1항 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처리기준을 변경한 경 우에도 또한 같다.
-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 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①·① (생 략)

①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ㆍ규모

⑦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
26조까지에 따른다.
<ul><li>⑨ (현행 제7항과 같음)</li></ul>
<del></del>
8
<del></del>
8
<u></u>
8
8          처리기준(처 리기준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 다)         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

① · ① (현행과 같음)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제10조제6항 각 호와 같은 조 제7항또는 제11조제5항 각 호와 같은조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4조(건축신고) ① (생 략)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u>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u> 준용한다.
- ③ ~ ⑤ (생 략)
-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저 ①·② (생 략)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사항의변경허가에 관하여는 <u>제11조제</u>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6항 및 「행정기본법」 제
<u>24조제3항의</u>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건축신고) ① (현행과 같
$\frac{\bullet}{\Box}$ )
②
제11조제5항부터 제7항까
지를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1조제
5항부터 제7항까지를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u>제11조제</u> <u>5항·제6항</u> 및 제14조제3항· 제4항을 준용한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② (생략)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 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 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

4
제11조제
5항부터 제7항까지

제80조(이행강제금)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 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 항까지에 따른다.

<삭 제>

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 과·징수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①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u><삭</u> 제>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제2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3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 승인의 의제) ① 제22조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 다.

아

- 1. ~ 10. (생략)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한다.
- 1. ~ 10.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 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5(특별관리지역의 건축물	제6조의5(특별관리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① (생 략)	등에 대한 조치) ① (현행과 같
	음)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2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	
간 내에 해당 시정명령의 이행	
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	
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절차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u>「개발</u>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
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제1	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제1
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을	<u>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u>
준용한다.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의 의제) ① <u>제17조에</u>	허가 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	장관이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u>경승인이 있는</u> 때에는 다음 각	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	
·신고·지정·면허·협의·동	
의ㆍ해제ㆍ심의 등(이하"인ㆍ	
허가등"이라 <u>한다)</u> 을 받은 것으	<u>한</u> 다)에 관하여 인·

로 보며, 지구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 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 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 37.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지구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③ (생략)

으로 본다.

<신 설>

허가능의 관계 행성기관의 상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u>해당 인·허가등</u>
1. ~ 37. (현행과 같음)
②
<u>o</u> ]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
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업무의 정지) ①・② (생	제39조(업무의 정지) ①・② (현
략)	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	<u>&lt;삭 제&gt;</u>
지처분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u> &lt;신 설&gt;</u>	제39조의3(개설등록 취소 등의 제
	<u>척기간) ① 제38조제1항·제2항</u>
	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업
	무정지처분은 그 위반행위가 종
	료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의
	<u>경우: 5년</u>
	2. 업무정지처분의 경우: 3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제척기간에 관
	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3조

###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61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제61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 를 할 때에 특별시장 ·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 · 시장 또는 군수가 그 개발 행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 허가・승인・면허・협의・해 제 · 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 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 --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 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 · 허가등을 받은 대해서는 -----것으로 본다. 1. ~ 19. (생략) 1. ~ 19.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행위 인 · 허가등 의제의 기준 · 효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 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 하고,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 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 다. 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그 내 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 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 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 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 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 · 허가등의 처 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 로부터 제출받아 통합하여 고시 하여야 한다.

괄협의회) ① 특별시장·광역시 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61조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 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삭 제>

<삭 제>

<삭 제>

제61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 제61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 괄협의회) ① -----제61조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 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 하여야 한다.

② 제61조제3항에 따라 협의 요 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제92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제 ① (생 략)

-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 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 다.
- ③ (생략)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u>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에</u>
관하여 「행정기본법」 제24조
제3항
② _「행정기본법」 제24조제3
<u> কু</u>
ll92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 (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
  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
  까지를 준용하고,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
  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

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 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 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 정 안
제13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3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2
의제를 받으려는 시행자(제1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8조제2항	
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를 말하며, 이하 "시행	
자"라 한다)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	
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등이 수
	반되어 건축허가서 • 건축신고
	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때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
	허가 관련 서류에 첨부된 도면
	<u>으로 그 서류를 갈음한다.</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	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
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	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
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	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u>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u> <u>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u>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의 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삭 제〉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 건축물의 건축 등이 수반되어 건축허가서 • 건축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할 때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허가 관련 서류에 첨 부된 도면으로 그 서류를 갈음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제57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	
가를 받은 때(시장·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	
가・결정・승인・신고・등록・	
협의·동의·심사·지정 또는	
해제(이하"인·허가등"이라 <u>한</u>	<u>한</u>
<u>다)가</u> 있은 것으로 보며, 제50조	다)에 관하여 시장·군수등이
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	서는 해당 인·허가등이
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② 사업시행자가 공장이 포함된	②
구역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의 사	
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 외에	
다음 각 호의 <u>인·허가등이</u> 있	<u>인</u> ·허가등에 관

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 1. ~ 4. (생 략)

③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때에 시공자가 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계 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나 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계 획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 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라 의제 되는 인·허가등에 해당하는 사

하	여	시경	삵 .	군	수등	-0]	인 .	허	가
등.	의	관계	]] ट	행정	フ] <del>ミ</del>	관의	장	과	미
리	협	의현	한 기	나항	에	대ㅎ	H서	는	해
<u>당</u>	인	• ই	<u> </u>	등이	] -				

1. ~ 4. (현행과 같음)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때에 시공자가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계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나 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정하는 기한까지 인·허가등의 의제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4	 	 	

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제3항단서의 경우에는 서류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도달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협의된 것으로 본다.

<신 설>

	<u>제3항</u>
	<후단 삭
제>	

- ⑤ ~ ⑦ (현행과 같음)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제19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u>&lt;삭 제&gt;</u>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	
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작성	③
하거나 인가할 때 그 내용에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u>&lt;</u> 후단 삭제>
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의견	
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	
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한 것으로 본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6
지정할 때 제1항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제안자가 제11 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 된 때에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생 략)

<신 설>

제5항

- ⑦ (현행과 같음)
- ⑧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 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6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u>&lt;삭 제&gt;</u>
하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u>한다.</u>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⑤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
	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
	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혀 햀 제15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 제15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삭 제〉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실시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거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법률로 정하 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야 한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일로 한다. 사항 외에 인 ·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 26조까지를 준용한다. <삭 제>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 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20조제2항에 따 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 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의 의제) ① 제28조에	허가 등의 의제) ①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승인고	
시 또는 변경승인 · 변경승인고	
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신고	
• 지정 • 면허 • 협의 • 동의 • 해	
제・심의 등(이하"인・허가등"	
이라 <u>한다)</u> 을 받은 것으로 보며,	한다)에 관하여 지정권자
지구계획 승인고시 또는 변경승	<u>가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u>
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u>해서는 해당 인·허가등</u>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b>.</b>
1. ~ 29. (생 략)	1. ~ 29. (현행과 같음)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인ㆍ	<u>&lt;삭 제&gt;</u>
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	
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서	
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제1항 각 호의	<u>②</u>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지구계획을 <u>승인</u>	<u>승인</u>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또는 기	<u> 변경승인</u>	<u>하려는</u>	
	- <u>한다</u>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 26조까지를 준용한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	제7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
<u>의신청)</u>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u> 의신청 특례)</u> ①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	
터 30일 이내에 <u>서면</u> (전자문서	<u>대통령령으로</u>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u>.</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
로 정한다.	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u>에 따른다.</u>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u>신청)</u>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	<u>신청 특례)</u> ①
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	
부터 30일 이내에 <u>서면</u> 으로 시	<u>대통령령으로</u>
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그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_\_\_\_\_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 <u>(이의신청)</u> ① (생 략)	제13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불
	허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
	<u>례)</u>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	2
은 시장·군수 또는 <u>구청장은</u>	<u>구청장은</u>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	이내에
·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	
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이행강제금) ① ~ ④ (생	제18조(이행강제금) ① ~ ④ (현
략)	행과 같음)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⑤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시장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
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
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	<u>청을 할 수 있다.</u>
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	
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⑥ 이행강제금의 부과, 납부, 징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시장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령으로 정한다.

제기할 수 있다.

①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 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⑧ 이행강제금의 부과, 납부, 징

 수 및 이의제기 방법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삭 제>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제55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사업시행자가 제12	의제 등) ①
조 및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	
계획인가를 받은 때(시장・군수	
등이 직접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	
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u>인·허가등이</u> 있은 것으로 보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시장ㆍ군
며, 제12조제3항 및 제29조제5	수등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
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	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	
으로 본다.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② 사업시행자가 관리지역에서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	
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	
항에 따른 인ㆍ허가등 외에 다	
음 각 호의 인·허가등이 있은	인ㆍ허가등에 관하

것으로 보며, 제29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 1. • 2. (생략)

③ 사업시행자가 공장이 포함된 구역에 대하여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 외에 다음 각호의 인·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제29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 1. ~ 3. (생략)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 항까지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 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시 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 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 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때 에 시공자가 선정되어 있지 아

여 시장・군수등이 인・허가등
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이
<del></del>
1.•2. (현행과 같음)
(3)
인·허가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등이 인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 1. ~ 3. (현행과 같음)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시공자가
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계
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나 제6항
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
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정
하는 기한까지 이 조에 따른 인
·허가등의 의제에 필요한 관계

니하여 관계 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나 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
 계획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등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계 획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 서를 작성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의제되는 인 • 허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 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제4항 단서의 경우에는 서류가 관계 행정기관 의 장에게 도달된 날을 말한다) 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 하여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된 것으로 본다.

⑥·⑦(생략) <신설>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⑤
<u>제4항</u>
<u>&lt;</u> 후단 삭제>

- ⑥·⑦ (현행과 같음)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

제65조(이행강제금) ① (생 략)

- ②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한다.
- ④ 시장·군수등은 최초의 조치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장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⑤
   시장·군수등은 제11조제1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

   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

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65조(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군수등은 최초의 조치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장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 지에 따른다.

<삭 제>

<삭 제>

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 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 <삭 제> 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 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 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 <u>수한다.</u>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
가등의 의제 등) ① ~ ③ (생	가등의 의제 등) ① ~ ③ (현행
략)	과 같음)
<u>&lt;신 설&gt;</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
	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
	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4조 <u>(이의신청 등)</u> ①・② (생	제34조(시설부담금 부과처분에 대
략)	<u>한 이의신청 특례)</u>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	<u>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u>
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u>에 따른다.</u>
제39조의21(이의신청 등) ①・②	제39조의21(개발이익 재투자에 대
(생 략)	<u>한 이의신청 특례)</u>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	<u>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u>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u>에 따른다.</u>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
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가등의 의제) ①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신고・결정	
•지정 • 면허 • 협의 • 동의 • 해	
제 또는 심의 등(이하"인ㆍ허	
가등"이라 <u>한다)</u> 을 받은 것으로	한다)에 관하여 새만
보며, 새만금청장 또는 시·도	금청장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
지사가 관계법률등에서 정하는	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
절차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	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 53. (생 략)	1. ~ 53. (현행과 같음)
②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	<u>&lt;</u> 삭 제>
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	
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	
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으 <삭 제> 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 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 ⑥ (생 략) <신 설>

⑤·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제3항·제5항 및 제6 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 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 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 다.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홍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
가등의 의제) ①·② (생 략)	가등의 의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국가가 사업	③
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4조제	
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	
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4	
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	
인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	<u>&lt;</u> 후단 삭제>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u>야 한다.</u>	
<u>&lt;신 설&gt;</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
	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

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 혀 햀 개 정 아

- 제61조의2(이행강제금) ① (생 략)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 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 징수한 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 어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 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 서로 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5 항, 제17조제5항 또는 제18조제 4항에 따라 이행명령을 받은 자 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 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 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 제61조의2(이행강제금) ① (현행 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이의제기 절차 등 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 지에 따른다.

<삭 제>

<삭 제>

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삭 제>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안 제22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제 | 제22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되 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 ·허가·인가·결정·신고·지 정 • 면허 • 협의 • 해제 • 심사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 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 다)에 관하여 건설청장이 인ㆍ 획의 승인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 •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 해당 인ㆍ허가등-----으로 본다. 1. ~ 37. (현행과 같음) 1. ~ 37. (생 략) ② 사업시행자는 인ㆍ허가등의 ② 건설청장은 실시계획을 승인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시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계획의 승인신청을 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건설청장은 실시계획을 승인 <삭 제>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u>④</u> (생 략) <신 설>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7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 등 의
	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
	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8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28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u>사항 외에 인·허가 등 의제의</u>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
	26조까지를 준용한다.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
허가 등의 의제 등) ① (생 략)	허가 등의 의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	<u>&lt;삭 제&gt;</u>
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	
획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	
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	
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5조	③
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	
류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에게 제출한 후 협의하여야 한	
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u>&lt;후단 삭제&gt;</u>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승인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	
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	
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인·허가등의 기준을 위 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생략)

<u><신</u>설>

<삭 제>

- ⑤ (현행과 같음)
- ⑥ 제1항·제3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제24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	<u>&lt;삭 제&gt;</u>
는 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	
<u>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u>	
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u>야 한다.</u>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u>승인</u>	③ <u>승인</u>
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u> 또는 변경승인</u>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계획	
을 작성하는 경우에 그 내용에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u>&lt;후단 삭제&gt;</u>
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	
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	
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u>것으로 본다.</u>	
④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u>승인</u>	④ <u>승인</u>
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u> 또는 변경승인</u>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인·허가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허가 의제 협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신 설>

제46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에 지 따른 의제) ① (생 략)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 해당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선도 지구의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 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u>.</u>
⑤·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
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
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
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
<u>다.</u>
세46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에
따른 의제) ① (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
3
<후단 삭제>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 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
 26조까지를 준용한다.

##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 정 안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	<u> 가등의 의제)</u> ①
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결정・인가・허가・협	
의 · 동의 · 면허 · 승인 · 처분 ·	
해제 • 명령 또는 지정(이하"인	
·허가등"이라 <u>한다)</u> 을 받은 것	<u>한</u> 다)에 관하여
으로 보며, 지정권자가 실시계	지정권자가 인ㆍ허가등의 관계
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것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u>드</u>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 20. (생 략)	1. ~ 20. (현행과 같음)
②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	②
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 그 계	
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u>이 경우 관계</u>	<u>&lt;</u> 후단 삭제>
기관의 장은 지정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	

#### 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설>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ㆍ허	<u>&lt;삭 제&gt;</u>
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사	
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	
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는 때	
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u>&lt;삭 제&gt;</u>
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	
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	
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	
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	
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u>⑦ 제1항·제3항·제5항 및 제6</u>
	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
	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

제55조의2(이행강제금) ① (생략)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 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고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 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5조의7에 따른 양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그 양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 ⑤ 시·도지사는 제5조의7에 따른 양도명령을 받은 자가 양도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u>24</u>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 <u>다.</u>

제55조의2(이행강제금) ① (현행 과 같음)

- ② 시·도지사는 제5조의7에 따른 양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그 양도명령이 이 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 지에 따른다.

<삭 제>

<삭 제>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 하여야 한다.

<u>⑥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u> <u><삭 제></u>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징수한다.